	취득세	취득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 제외 비과세-신청X / 면제-신청	과세표준 (취득가액)	구분	표준세율 (±50%)	특 중과기준세율만 적용(2%)	례세율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과세율 (몇 배 더 건겠다!) + 과기준세율×4 중과기준세율	·8% + 중과기준세율×4	
	애애	원칙: 잔금 계약상 잔금지급일 (미표기)계약일+60일 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국수공판장) 제외: 먼저 등기.등록시 등기등록일 + 1년이내 인접토지건물 취		원 신고 당시의 신고가액 최 연부취득 매회 지급한 연부금	농지 (논밭과수원목장)	3%		환매등기 병행하는 농지 매매 3-2 = 1%				
	교환	물건 인도일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자		농지 외	4%		환매등기 병행하는 농지외 매	-11	계모호시 바닥면적 10배) 제 #+6500이대+여전지역아니고		
	유 현물출자 상 (돈대신 물건투자)받음	주식 교부일 or 명부개서일 중 빠른 날	공부상 취득자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외 시가표준보다 작을 때 	의무 정		의무 성립 후 취득시기 도래	4-2 = 2%	660이내+150이내+6500이내+연접지역아니고,허가지역X 2) 골프장(회원제, 원시취득or변경등록): 건축물 + 토지 + 입목 3) 고급오락장: 건축물 + 부속토지 (용도변경or공사시			
	경 계 연부취득		계약해제시 취득세 환급 (원시취득납세의무없는 취득)	례 (국수공판장검) 부당행위 :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승 주 _{6억 ~ 9억}	(취득가*2	/3억-3)×1/100	환매시 표준세율 × 50%	, ,	계모호시 바닥면적 10배)		
		원칙: 사실상 각 연부금 지급일 2년 이상에 걸친 + 예외: 먼저 등기.등록시 등기등록일 취득가액 50만 초과	계약의 해제 :		계 택 9억 이상	1 4%	국인소유의 물건을 임차하여 입하는 연부취득시		5) 고급 주택	가표준액 3억 초과 (배제 : { 연면적 <mark>영도변경시 배</mark> 기		
승	대물변제	상계처리일 농지 3% / 농지외 4%	3) 정기행위 및 해제		다주택	중과세			주택 : 가액 	기타 331초과		
계취	부담부증여 중 채무인수	수액 농지 3% / 농지외 4% 4) 이행불능 및 해제			지분취득시 당시전체		<mark>├액=지분가액∗전시표/지시표</mark>			662초과		
일반취득	상속 or 유증	상속개시일 납세의무자 : 상속인 각자 or 상속받은 만큼씩 유증개시일 단,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	상속재산 등기전 협의 재분할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변동 채권자대위에 의한 협의분할시	원칙 : 신고한 신고가액 없거나 미달 : 시가표준액 비과세 상속으로 받은 사용불가 차량	농지 상속 농지 외	2.3%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임시 수입 묘지에 있을 레 (2%)	자경 농민의 농지 상속 2.3-2 = 0.3% 1가구1주택이 된 자 2.8-2 = 0.8%(고급주택 제외)	구 주 초과 택 시설 ## 1 ## 1 ## 1 ## 1 ## 1 ## 1 ## 1 #	엘베 에스컬 or 수영장67 245초과	67	
	ㅜ 상 승 증여 or 기부 계	원칙: (주기로 한) 계약일 (시기도래,조건성취 시점) 예외: 먼저 등기.등록시 등기등록일	해제 입증시 (등기X) - 화해.인낙./ 공정/ 계약해제		상 일반	3.5%		환 상 법인의 합병으로	공동 <u> </u>		건이 건이	
		상속재산등기 후 협의-재분할하여 초과취득한 재산 : 증여	신고서 / 부동산거래계약해	입증물가지 [승 증여 비영리단체	1 2 8%	학교 .사회복지법인 정당 복지협회.	분할과 이전과 이혼으로 인한 입(목) 맞춤. (표준세율 - 2%)				
	재산분할 청구 법인의 합병	취득물 등기등록일	제신고서 60일 이내 분할된 재산을 다시 반환시		재산분할 청구		증여간주 영리법인 3.5 특수성	재산분할 취득(이혼) 부동산 1.5 영리법인의 합병시 1.5% 된 부분을 각 1구의 건물로 봐 공동주택기준을 적용하여 고급주택				
					법인 합병	증여간주						
						J	비영리법인 2.8 인정	비영리법인 합병시 0.8%	판정 (배제 60일이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칙: 공사준공인가일 예외: 사용승낙일, 허가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2비과세 : 규모관계없이 당시 시가표준액 9억이하 공동주택 개수	매립 간척 2	2.8%		과밀억제권역 안 1. 표준세율대상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표준세율	대도시 ' 1, 주택 유상승계취득 이외	_	
		기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취득 시 : 사용검사를 받은 날 구모)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취득시 :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주택법은 비과세 /건축법상 과세) 1년미만 임시건축물			에 접속된 부속시설부지로 지인 토지 취득시 2%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배 4% 3배 표준세율 대상 취득에 대한 : (표준세율 3배 - [중과기준세율 2배])				
원 시 취 득	건축 (신축. 재축)	1. 일반적: 사용승인서 받은날 (前 임시사용승인일 or 승인불가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vs 사용일 중 빠른날 조합원용 재건축 주택의 경우 - 조합원분: 조합원 2. 특별법 도개법: 준공검사증명서 받은 날 +() - 조합분: 나머지		원칙 신축. 개축 - 소요된 공사비전액 약 1비과세	원 시 건축(신축증축)	2.8%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취득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1년미만은 비과세)	2. 중과기준세율 특례1적용대· [중과세율 × 3]		(표준-중과)×3 3. 주택 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		
		3. 특별법 도정법 : 준공인가증 받은날 +()	(분양받으면 승계취득자)	1. 국가 등의 취득	쥐 득	이경	이전으로 인한 취득시 0.8	 공장 신설 : 생산설비 (창고,사	공장 (원시취득만, 개인. 법인 공통) 실 포함) 면적 500 이상 + 비도시형 업종일 것			
		시효가 완성된 날		(외국정부는 상호주의) 2. 국가등에 기부채납 조건	점유취득			증설 : 연면적 330 초과	or 공장면적 20% <i>=</i>	츠과 + 비도시형 업종일 것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제조 조립 실수요자 인도일 vs 계약상 잔금지급일	(원시취득납세의무없는 취득)	3. 신탁재산:신탁법+신탁등기 단, 명의신탁 및 조합vs조합원간 부동산취득은 과세	차등 조립	제외	승계시 과세					
	선박 건조	원시취득 이후 승계취득이 취득세 납부시기	(원시취득납세의무없는 취득)		선박건조	제외	승계시 과세	과세범위 : 구역내 신설 / 이외	기외지역에서 전입 / 수도권-〉서울			
	광업권 어업권 출원			4. 환매권 행사 : 징발.공취법에 의한 징발을 환매	광업권 등	면제	승계시 과세	배제 : (산업단지, 공업단지, 유 구역 내 폐쇄 후 이전 (수!		기존 공장의 포괄승계 / 타인 공장 임차인의 2년		
	082 182 22				082.0	S 11-11 -1-11		신청 후 행정구역변경으로 고		기존공장 철거 후 1년이나		
간 주 (의제) 취 득 과거 취득 성립	토지의 지목 변경	원칙: 사실상 변경된날,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날 예외: 사용일 변경 당시의 소유자	원칙: 증가한 가액(신고) 예외: 지목변경후 시가표준액 단, 판결/법인장부로 지목변경	- 변경前 변경원인시점의 시가표준액 비용입증시 그 비용으로 과세	토지의 지목 변	경	토지의 지목 변경 2%	부동산 취득 후 5년이상 경괴 법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영리/비	이상 경과후 공장 신설. 증설 차량 기계장비의 법인 (영리. 비영리 모두 + 휴면중인 법인 인수 ((영리/비영리)의 부동산 취득		한 대체(30일 이내)	
	건축물의 개수 (대수선,시설수선)	1. 일반적 : 사용승인서 받은날 (前 임시사용승인일 or 승인불가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vs 사용일 중 빠른날 2. 특별법 도개법 : 준공검사증명서 받은 날 +() 3. 특별법 도정법 : 준공인가증 받은날 +()	납세의무자 주체구조부 취득자(소유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 간 주(세금은 소유자 몰빵)	장부비치 : 장부의 계산한 가액	간 건축물의 개수 주 (대수선,시설수선 취		개수로 인한 취득 2% (면적증가 : 원시취득)	(시출.단진.경기) 영리법인 본점				
	차량 장비. 선박 등의 종류 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날	납세의무자 변경 당시의 소유자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 취득전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	차량 장비. 선박 · 종류 변경	등의	차량 장비. 선박 등의 종류 변경2%					
	과정수수의 수식 취득	비상장 법인의 총 지분 50% 초과한 과점주주(+배우자 등) 비상 <mark>장법인 설립시 발행 주식.지분의 취득</mark> 초시 법인재산(취득세과세대상전체)*지분율 / 증가시 증가한 지분율로 각자의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			과검주주의 주식 취득 과검주주의 의제취득 2		과점주주의 의제취득 2%	3. 소유자와 공장 증설자가 디 4. 2이상의 세율시 높은 세율		채권보전 목적 취득한 부	동산(대물변제받은)	
	•	시설대여업자 :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 등록하여 제공해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기타 중과기준세율 적용대상 증가 일반->과점주주							
		지입제 차량 : 업체의 면의로 등록해도 취득대금 지급자 따로 있다 입증시 대금지급한 자 취득						5. 동시적용시 - 과밀 vs 대도시 : 표준세율 3배				
9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전시 새 위탁자의 취득				명의신탁에 의한 취	 획득	농지 3 / 농지외 4	사치성vs대도시 : 일반 : 표준세율 3배 + 4% 주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6배				
타 임			기 <mark></mark>	 환 모두 취·	득) 농지 3 / 농지외 4			"				
취	공유권 분할에 의한 취득 (각	분할후 단독 소유권 취득시	공유권 분할에 의한 취득 공유물 지분대로 분할 취득시 0.3									
<u>=</u>	7 Een -12 m-1 (4	요즘요 게 기계 기구에씩 에/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	(각 분할분에 대해	취득세과시	ll) (ペンパン (ペンパン) (ペン) (ペンパン) (ペン) (ペン) (ペン) (ペン) (ペン) (ペン) (ペン) (ペ	(각 분할분에 대해 취득세과세) (자기지분 초과 제외) 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 2.3%					